



주목할 만한 내용:

1. 출입국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기술자에 대한 조건 완화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갱신 신청 서류 업데이트

02. 개인소득세 ("PIT")

- 하노이 세무국은 세무 조사와 사회보험 조사를 동시에 실시할 예정임
- 수습 근로자에 대한 추가수당이 PIT 부과됨

03. 조세행정

- 제16/CT-TTg호 지시 및 제17/CT-TTg호 지시의 시행 기간 동안 세금 신고서의 지연제출은 일부 경우에 행정 위반 제재가 부과되지 않음
- 초과납부 세액 처리

04. 외국인계약자세 ("FCWT")

- 물품 가격 Hedging에 대한 FCWT
- 외국 합자 기업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FCWT
- 투자 프로젝트의 일부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VAT")
- 특별소비세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초안

05. 법인소득세 ("CIT")

- 해산물 가공 활동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 대만에서 세금을 납부된 대만 원천 소득에 대한 CIT 정책
- 법적 대표자 변경 시 소프트웨어 제품을 생산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
- 투자 프로젝트의 위치 변경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 정책

06. 무역 및 관세 (Customs and Trade)

-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임가공 목적 수입물품 대한 과세에 관한 지침
- EPE 건설을 위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하청업체(Sub-contractor)에 대한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지침
- 부가세 환급 관리 강화
-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정책



결의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기술자에 대한 조건 완화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갱신 신청 서류 업데이트

Covid-19의 상황에서 2021년 9월에 정부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 갱신 및 인증에 관한 2020년 12월 30일 제 152/2020/ND-CP호 시행령 ("제 152호 시행령")의 일부 규정과 조건을 완화하고 유연하게 수행하도록 지방의 유관기관에 지시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전문가/기술자에 대한 조건 완화:

1. 제 152호 시행령 제 3조 3항 a점: 대학 이상 학위증명서가 있으며 베트남에서 근무할 직위와 관련 최소 3년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제 152호 시행령 제 3조 6항 a점: 최소 01년 동안 기술 또는 기타 전공 교육을 받았고 베트남에서 근무할 직위와 관련 최소 03년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노동허가서 신청서류 업데이트:

3. 제 152호 시행령 제 9조 4항 b점: 제 152호 시행령 제 3조, 3항 및 6항에 의해 규정한 전문가, 기술자의 증명서류: 졸업장, 증명서, 확인서; 외국 기업에 의해 발급된 경력증명서, 경력 연수 증명서, 취업 증명서 또는 발급된 노동허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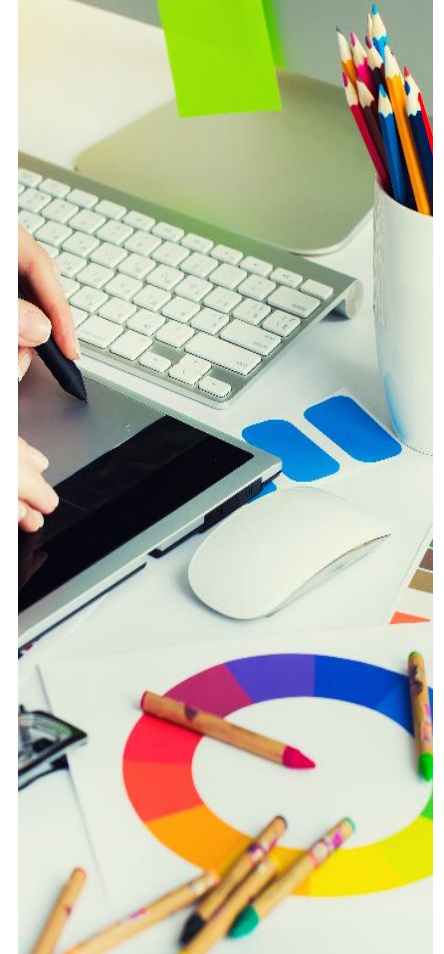
노동허가서 발급, 재발급, 면제 신청 서류 업데이트:

4. 제 152호 시행령 제 8조 3항 d점; 제 9조 5항; 제 17조 5항: 법령에 따라 유효한 여권 사본.

기타 규정 :

5. 유효하고 있는 노동허가서를 가지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06개월 미만으로 다른 도시, 지방에서 일하도록 파견되면 노동허가서 재발급 필요없고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을 파견된 지역의 노동관리당국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정부의 2021년 9월 9일 제 105/NQ-CP호 결의)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개인소득세 ("PIT")



사회 보험 부채 회수 계획

하노이 세무국은 세무 조사와 사회보험 조사를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세무국은 납세자 사무실에서 세무 감사 조사를 수행할 때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회사에 촉구하기도 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결론문을 발표할 때 회사가 사회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을 아직 등록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법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을 등록하고 납입해야 하며 결과를 정기적으로 사회보험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세무당국은 조사를 통해 회사가 직원에게 사회보험을 등록했고 사회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한 것으로 신고했고 세무상 공제 비용으로 인식했지만 실제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보험료 부채가 있음을 발견할 경우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법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하노이 인민위원회의 2021년 8월 26일 제194/KH-UBND호 계획)

신규 규정

수습 근로자에 대한 추가수당이 PIT 부과됨

회사가 수습근로자 (의무적인 사회.의료.실업보험의 부과대상이 아님)에게 급여와 같이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추가수당은 PIT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8월 19일 제32076/CTHN-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조세행정



지침 문서

제16/CT-TTg호 지시 및 제17/CT-TTg호 지시의 시행 기간 동안 세금 신고서의 지연제출은 일부 경우에 행정 위반 제재가 부과되지 않음

납세자는 세금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격리기간 동안 (국무총리, 정부사무실, 현지 유관기관, 국가당국에 의한 격리 통지결정에 따른 격리 기간을 포함) 납세신고서를 지연 제출하게 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음. 구체적으로:

- 납세자는 본사 및 주소 (거주 및 임시 거주지)가 격리 및 봉쇄지역에 위치한 단체 또는 개인이다.
- Covid-19으로 인해 유관기관의 결정 및 통지에 따라 격리 중인 개인.

(호치민 세무국의 2021년 7월 19일 제/6770/CTTPHCM-KK호 OL)

(하노이 시 세무국의 2021년 7월 29일 제/29592/CTTPHN-KK호 OL)

초과납부 세액 처리

회사가 세금을 초과 납부한 경우 제 156/2013/TT-BTC 호 시행규칙 제 33 조에 따라 초과납부 세액을 처리한다.

회사가 세무당국에 의해 기록된 국가예산에 대한 납부내용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경우 제 84/2016/TT-BTC 호 시행규칙에 첨부된 제 C1-11/NS 호 양식으로서의 조정 요청서 및 납세 영수증 또는 오류 조정 요청내용과 관련정보를 같이 제출한다.

(Bac Giang 세무국의 2021년 8월 10일 제/3685/CTBGI-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외국인계약자세 ("FCWT")



지침 문서

물품 가격 Hedging 에 대한 외국인계약자세 ("FCWT")

베트남 회사가 매입 자재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물품 가격 Hedging을 수행하는 외국인 계약자와 유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베트남 회사가 물품 보험 계약에서 Hedging 을 수행할 때 차액을 받는 경우:
 - ✓ VAT
 - i. 이 소득이 법규정에 따라 금융 파생상품 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VAT가 부과되지 않다; 혹은
 - ii. 기타 금융소득으로 간주되어 회사가 대신 수령증을 발급할 경우 VAT 신고.납부 대상이 아니다.
 - ✓ CIT: 회사는 CIT 부과된 기타 소득으로 인식한다.

- 베트남 기업이 외국인 계약자에게 Hedging업무를 수행할 때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 회사가 베트남에서 세금을 직접 신고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베트남 회사가 결제하기 전에 FCWT 를 원천 징수 하고 외국인 계약 자를 대신 하여 신고.납부할 책임이 있다.

- ✓ 수익에 대한 CIT 2%; 그리고,
- ✓ VAT:
 - i. 이 소득이 법규정에 따라 금융 파생상품 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VAT가 부과되지 않다; 혹은
 - ii. 기타 금융소득으로 간주되어 회사가 대신 수령증을 발급할 경우 VAT 신고.납부 대상이 아니다.

(Long An 세무국의 2021년 7월 26일 제2356/CT-TTHT호 OL)

외국 합자 기업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FCWT

외국 기업은 베트남 기업과 합작하여 판매자가 베트남 영토로 물품 인도와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는 Incoterm 조건으로 베트남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인 계약자는 베트남 FCWT이 부과될 대상이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8월 13일 제31558/CTHN-TTHT호 OL)

투자 프로젝트의 일부 양도 시 부가가치세 ("VAT")

회사가 투자 프로젝트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받은 회사가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하고 투자법 및 부동산법에 의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고 VAT 대상인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비즈니스를 제공하면 양도 회사는 프로젝트 양도에 대해 VAT를 계산, 신고 및 납부할 필요가 없다.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양도 회사가 규정에 따라 VAT를 계산,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1년 8월 12일 제12482/CTBDU-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초안

특별소비세법을 수정.보완하는 첫번째 초안

초안은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예: 배터리 전기차)을 특별소비세법 제7조, 4항, 섹션I에 추가한다.

따라서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세율은 적용 경로와 좌석 수에 따라 2%~10%이며 세부적으로 9인승 미만, 10인승부터 16인승미만, 16인승부터 24인승미만까지의 배터리 전기차 및 승객과 화물을 운송용 전기차 등 간의 적용 세율 차이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의 발효일로 부터 그리고 발효일로 부터 6년차부터 적용 세율이 변경될 예정이다.

첫번째 초안은 2021년 8월 25일에 발행되었으며 공식적으로 발효되지 않는다.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소득세 ("CIT")



지침 문서

해산물 가공 활동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2015년 과세연도부터 해산물 가공 활동으로 생기는 소득은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 ("CIT") 인센티브를 다음과 같이 적용 받을 수 있다.

- 사회 경제적 조건이 극도로 어려운 지역에서 발생된 소득의 경우 법인세가 면제된다.
- 사회 경제적 조건이 어려운 지역에서 발생된 소득의 경우 법인세 우대세율 10%이 적용된다.

(GDT 의 2021 년 7 월 23 일 제2753/TCT-CS호 OL)

대만에서 세금을 납부된 대만 원천 소득에 대한 CIT 정책

회사가 2020년에 대만에서 (베트남과 이중과세방지협정과 체결했음) 소득이 발생했으며 대만에서 CIT (또는 CIT와 유사한 다른 세금)가 부과되므로 외국 법규 및 협정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대만에서 납부한 (또는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 세액은 재무부의 2013년 12월 24일 제 205/2013/TT-BTC 호 시행 규칙 제 48조에 의한 조건 및 원칙을 충족하면 **베트남에서 납부세금에서 공제 가능하다.**

재무부의 2013년 11월 06일 제 156/2013/TT-BTC 호 시행 규칙 제 44조 4항 및 협정에 따른 혜택 한도에 대해 기타 규정이 명시된 경우 제외 회사가 베트남과 해외국가간의 이중과세 방지협정 적용 시점 이전 **3년 이내에** 발생한 해외 납부 세금 공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회사는 제 156/2013/TT-BTC 호 시행 규칙에 첨부된 **제 03-4/TNDN 호 부록**에서 과세 기간에 공제된 해외 납부 법인세를 신고하고 제 151/2014/TT-BTC 호 시행 규칙에 첨부된 법인세 확정 신고서 (제 03/TNDN 호 양식)의 **C15 기준** (과세연도에 공제되는 해외 납부 소득세)에 반영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8월 17일 제31912/CTHN-TTHT호 OL)

법적 대표자 변경 시 소프트웨어 제품을 생산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

회사가 2012년 최초 투자 증명서로 설립되었고 "소프트웨어 생산" 활동을 포함한 여러가지 사업부문을 등록한 경우, 회사가 (i)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생산의 투자 프로젝트로 신규 설립되고 (ii) 재무부의 2012년 7월 27일 제 123/2012/TT-BTC 호 시행 규칙 제 18조 2항 b점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회사는 규정된 "소프트웨어 생산"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운영하는 동안 회사가 법적 대표자를 변경 등록을 하고, 이러한 변경이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회사가 프로젝트의 남은 기간 동안 법인세 인센티브를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8월 12일 제31451/TCT-CS호 OL)

위치를 변경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 정책

재무부의 2014년 6월 18일 제 78/2014/TT-BTC 호 시행 규칙 제 18조, 8항에 따르면 기업이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 받은 기간 동안 과세연도에 규정한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인센티브를 받지 못 하며 해당 연도는 기업의 CIT 인센티브 적용 기간에 제외된다.

따라서, 회사가 산업단지에서 프로젝트 수행으로 인해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프로젝트 수행 장소를 다른 산업단지로 옮기면 회사는 산업단지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하므로 옮기는 연도로부터 세금 인센티브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GDT 의 2021 년 05 월 28 일 제1784/TCT-CS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cont.)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임가공 목적 수입물품 대한 과세에 관한 지침

제 18/2021/ND-CP 호 시행령 제1조4항에 의거하여 납세자 또는 외주가공 업체/개인이 규정에 따라 베트남 영토내 수출품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가공시설 내 기계 및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 이를 관세당국에 통보할 경우 수출 임가공을 위한 수입물품은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출 임가공을 위해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가공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규정상 면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업체가 해외계약자의 물품 가공을 위해 수입된 물품은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관세총국의 2021년 8월 17일 제4065/TCHQ-TXNK호 OL)

EPE 건설을 위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하청업체 (Sub-contractor)에 대한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지침

본 OL에 따라 하청업체 (Sub-contractor)인 국내 기업이 EPE의 공장 및 사무실 건설에 참여하는 주계약자인 국내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청업체가 EPE 건설을 위한 물품을 직접 수입하면 수입 관세 및 VAT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관세총국은 각 성 및 시의 관세국에 규정에 따라 수입 단계에서 세금 미신고 및 미납부 사례의 점검, 조사 및 징수를 하도록 요청한다.

관세총국의 2021년 8월 27일 제4199/TCHQ-TXNK호 OL)

부가세 환급 관리 강화

2021년 8월 27일 재무부는 제 9877/BTC-VP호 OL을 공표하여 세무총국 및 관세총국에게 VAT 환급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한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서류를 엄격하게 검사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전, 중, 후에 심사를 강화한다;
-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시 기술 적용을 강화한다;
- 법규 위반 행위를 적기에 감지하고, 허위 계산서를 사용하면서 VAT 환급 정책을 이용하여 세금 사기 행각을 하는 단체 및 개인을 엄격하게 처리한다.
- 지역 당국 및 기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한다.

(재무부의 2021년 8월 27일 제9877/BTC-VP호 OL)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정책

수출입세법 제16조 13항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 공급품 및 부품의 경우 5년간 수입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관세당국의 2021년 8월 30일 제4249/TCHQ-TXNK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Park Eun Sil
Tax Manager
+84 90 220 4587
eunsiipark@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Making an impact since 1991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